「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1995. 9.

余 仁 坤(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硏究院의 硏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硏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硏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硏究院 國際硏究室

- 目 次 -

Ⅰ. 問題提起 1

Ⅱ. 「조·소 同盟條約」 締結(1961) 背景과 內容 2

1. 條約締結 背景 2
2. 條約內容 3

Ⅲ. 러시아의 條約廢棄 背景과 意圖 7

1. 러시아의 條約廢棄 背景 7
2. 러시아의 條約廢棄 意圖 10
3. 周邊國들의 反應 12

Ⅳ. 東北亞 및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14

1. 東北亞 安保環境에 미치는 影響 14
2.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15

Ⅴ. 韓國의 考慮事項 20

<附錄> 23

I. 問題提起

ㅇ 동서 冷戰期에 舊소련과 북한은 사회주의 연대성과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1961. 7. 6)을 기초로 이념, 정치, 군사, 경제 등 諸分野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ㅇ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과 한·소 수교, 소련의 崩壞, 김일성 사망 및 북·미 핵타결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로 러·북 관계는 새로운 變化를 맞고 있음.

ㅇ 특히 舊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3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폐기의사를 북한측에 通報하였는 바, 이는 당사국인 러·북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安保環境과 한·러 및 남북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는 同 條約의 체결배경과 내용 및 러시아의 조약폐기 배경과 의도를 分析함으로써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考慮事項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Ⅱ. 「조·소 同盟條約」 締結(1961) 背景과 內容

1. 條約締結 背景

ㅇ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東西陣營間의 냉전이 첨예화됨에 따라서 소련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미국의 對소 封鎖政策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미·일 안보조약」(1951)을 기초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을 中立化시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중·소관계는 1950년대 말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解釋과 사회주의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악화되었음.
- 일·소관계는 국교정상화(1956)에도 불구하고 北方領土問題와 미·일간의 안보조약 연장 교섭 등으로 대립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狀況에서 소련은 「미·일 안보조약」과 「한·미 상호안보조약」(1953)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影響力을 확대하기 위하여 극동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의 締結을 모색하였음.

ㅇ 한편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주요한 정책목표는 미·일과 한·미

군사동맹에 對應하고 한국전쟁에 참가한 중공군 철수(1958)에 따른 안보약화를 보완하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하여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축출해야 할 主敵'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적극 주장하였음.
- 또한 중국 및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維持해야 하는북한은 중소분쟁에 직면하게 되었는 바, 평화공존론을 强調하는 소련과 계급투쟁 및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중국 사이에서 양국과의 동맹조약을 통해 安保를 공고히하고 정치적으로 中立的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음.

○ 이와 같은 背景으로 소·북한간에는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1961. 7. 6)이 締結되었고, 중·북한간에는 北京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7. 11)이 締結되었음.

2. 條約內容

○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은 前文과 6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양에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發效(1961. 9. 10)되었음.

- 同 條約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을 假想敵國으로 한 동맹조약

인 바, 이에 따라서 「조·소 동맹조약」으로 通稱되어 왔음 (以下 「조·소 동맹조약」으로 稱함).

ㅇ 양국은 前文에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기초로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경제·문화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同 條約을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양국은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체약국 일방에 무력침공이 있을 경우 원조와 지지를 상호 제공할 것"을 決意하고 있음.

ㅇ 양국의 이러한 결의는 第1條에서 재천명되고 있는 바, "체약국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지체없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規定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第1條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통칭되어 왔음.
- 또한 同 條項은 단순히 "체약국 일방이 ……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도발에 의하여 武力侵攻을 당하는 경우에도 소련은 對北韓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북한이 해석할 소지가 있었음.[1]

---

1) 최근 「고려회」 主催 「코리아 포럼」(Korea Forum)에서 쿠나제 駐韓 러시아 大使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소련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전문적

○ 第2條는 "체약국 쌍방은 체약 상대국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規定하고 있음.

- 이는 국제사회의 양자 및 다자간 군사동맹조약에서 通常的으로 규정되는 조항임.

○ 第3條는 양국의 利害關係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상호협의, 第4條는 경제·문화관계의 강화·발전과 상호협조, 第5條는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한반도통일의 실현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第6條는 조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바, 동 조약은 10년간의 효력을 가지며, 체약국 일방이 期限 滿了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계속 효력을 가지며 동 절차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延長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북한 양국간의 제반관계는 중소紛爭時 북한의 親中政策, 김일성의 호전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소련의 비난, 1970년대 이후 한·소접근 등 때문에 간헐적으로 葛藤 樣相을 나타내기도 하였

識見에서 마련된 것이었으며, 북한은 소련의 자동군사개입을 믿고 있던 反面, 소련은 자동군사개입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쿠나제, "북-러조약 廢棄에 따른 러시아의 對韓半島政策," (서울 신라호텔, 1995. 9. 20).

으나, 소련 붕괴시(1991. 12)까지 동 조약을 기초로 30년간 비교적 잘 유지되었음.

- 이는 냉전시대에 양국간의 사회주의 理念結束이 비교적 공고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접근의 견제, 경제관계 확대 등의 면에서 양국간 利害가 일치하였기 때문임.

○ 동 조약은 소련 붕괴 직전 다시 更新(1991. 9. 10)되어 1996년 9월 10일까지 유효하게 됨에 따라서 舊소련의 계승국으로서 러시아가 동 조약을 이어받게 되었음.

Ⅲ. 러시아의 條約廢棄 背景과 意圖

1. 러시아의 條約廢棄 背景

ㅇ 러시아 외무부는 소련 崩壞 직후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같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主張하고, "소련의 해체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이 再檢討되어야 한다"[2]는 의견을 최초로 밝혔음.

- 특히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示唆하였는 바, 이는 러시아가 국내개혁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점과 冷戰終熄 이후 對美, 對韓國 신뢰구축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및 한국과의 제반관계 확대를 위한 선린우호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認識하였기 때문이었음.
- 이에 따라서 로가초프 옐친 대통령 特使는 평양 訪問時(1992. 1) 동맹조약의 유지조건으로 무력불사용과 국제규범 준수를 북한측에 요구한 바 있음.

ㅇ 以後 러시아 정부는 「조·소 동맹조약」을 계속 유지하되 "북한

2) *Daily Report: Soviet Union*, 24 December 1991, pp. 6~7.

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約束履行의 의무가 있다"[3] 고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 이는 러시아 정부가 남북한이 군사대치를 하고 있으며 「한·미 상호안보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狀況에서 東北亞地域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보장도 필요하다고 認識하였기 때문임.
- 한편 러시아 정부의 이와 같은 재해석은 러·북간 사회주의 연대성이 단절됨에 따라서 攻守同盟 성격의 「조·소 동맹조약」이 방어적 군사동맹으로 약화된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頂上會談(1992. 11) 이후 옐친 대통령과 러시아 외무부는 「조·소 동맹조약」의 수정이나 폐기와 관련,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였음.

- 옐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이미 死文化된 내용'이라고 밝혔음.
- 反面, 쿠나제 당시 외무차관은 옐친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1993. 2)하여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해석을 유엔헌장에 맞게 엄격히 제한한다는 諒解覺書를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4 March 1992, p. 26; *Izvestiya*, 1992. 8. 13.

- 옐친 대통령은 모스크바 한·러 頂上會談時(1994. 6. 2) 동 조약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조속한 개정요구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再强調하고, 2년후 동 조약 기한이 만료되면 폐기할 방침임을 밝혔음.
- 그러나 파노프 외무차관은 김정일 死亡을 계기로 한 訪北 이후 Moscow Interfax와의 회견(1994. 9. 27)에서 "평양에 대한 군사원조 규정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침략의 목표가 될 때 단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침략의 本質은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기존의 러시아 정부 입장을 堅持하였음.
- 이와 같은 미묘한 입장 차이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을 둘러싼 남북한간의 競爭關係를 조약 만료시까지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상기와 같이 남북한에 대해 미묘한 태도를 보였던 러시아는 결국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기하는 새로운 條約案을 협상하자는 의도를 북한측에 전달(1995. 6)하였으나, 북한은 별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第6條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 9월 10일로 만료되는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의사를 북한측에 通報

(1995. 8)하였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1995. 9. 7)하였음.

- 러시아는 동 조약이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役割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실정과 동북아 정세 및 러·북관계 상황에 符合되지 않으며, 舊소련 共和國들 이외에는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2. 러시아의 條約廢棄 意圖

○ 러시아의 「조·소 동맹조약」 廢棄意圖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과 한국 등의 經協擴大를 유도하며, 對北韓 關係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첫째, 현재 러시아의 最大課題는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내경제를 회복·발전시키는 것인 바, 러시아는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를 통해 북한의 돌발적 행동으로 惹起될 수 있는 한반도의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러시아의 現 政局은 다당제 民主選擧(1993. 12. 12) 결과에 의한 개혁파의 연방하원내 다수의석 확보실패와 극우보수파의 浮上 등으로 '불안한 안정(fragile stability)'이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의 向後 정국도 次期 總選(1995. 12 예정)과 大選

(1996. 6 예정)에 따른 제정파간의 이합집산으로 더욱 불안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展望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經濟는 일부 개혁정책의 성과들이 나타나 혼란 상태를 탈피하였으나, 시장경제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음.
- 따라서 러시아가 「조·소 동맹조약」에 의하여 한반도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이는 자국의 개혁정책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둘째, 러시아는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를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자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한·러관계의 障碍物을 제거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등의 對러 經協擴大를 유도하고자 함.

-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지역에서는 양자간 및 다자간 경협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러시아는 경제난 克服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러시아 정세의 不透明性과 「조·소 동맹조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일·러간 북방영토문제 등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對러 經協은 러시아의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음.

-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 등의 對러 經協, 특히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조·소 동맹조약」을 廢棄하려는 것임.

○ 셋째, 러시아는 北韓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심리적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對北韓 關係를 보편적인 국가간 선린관계로 전환하고자 함.

- 러시아는 韓半島 情勢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 바,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하여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舊소련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보호를 약속했던 「조·소 동맹조약」의 繼承을 정치적, 군사적,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겨왔음.
- 따라서 러시아는 김일성 死亡(1994. 7. 8)과 북·미 핵타결(1994. 10. 21)을 계기로 냉전시대의 殘滓로서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동맹조약을 폐기하고 對北韓 關係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3. 周邊國들의 反應

○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조·소 동맹조약」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새로운 한·러관계 定立 및 탈냉전의 국제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歸結"이라고 평가하였음.

- 韓國 政府는 특히 "러·북 군사동맹이 유지됨으로써 存在하던 한·러관계 발전의 마지막 障碍物이 제거되었다"[4]고 해석하고 있음.

○ 美國은 동 조약의 폐기 결정과 관련, "러시아가 경제회생을 위한 한국 투자의 유치를 摸索하고 對韓國 關係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5]으로 평가하였음.

○ 日本은 "한·소 수교와 옐친 대통령의 訪韓 등으로 동 조약은 유명무실화되었으며 금번의 폐기 통보는 이와 같은 現 實情을 추인한 것"[6]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 일본은 특히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한국 一邊倒政策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약 체결도 提案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금번의 폐기 통보로 러·북관계가 즉각 惡化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中國은 동 조약의 폐기에 별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는 對러 및 對北韓 關係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4) 「한국일보」, 1995. 9. 8.
5)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7, 1995, p. 5.
6) *NHK*, 1995. 9. 8.

Ⅳ. 東北亞 및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1. 東北亞 安保環境에 미치는 影響

○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는 북·미와 북·일 접근의 加速化와 한·러관계의 확대 등 동북아질서 재편을 촉진하는 한편, 역내국가들의 實利政策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지역에서 군사강대국인 미·러간의 직접적인 군사대결 가능성은 稀薄할 것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를 둘러싼 미·러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는 「조·소 동맹조약」 폐기 이후 동북아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發言權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形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국은 양자간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견제를 目的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핵심 동맹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태 안보체제를 檢討하고 있음.

○ 중·러 양국은 안보·군사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바, 자국의 國益을 추구하면서도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

향력 견제 등 중대 사안들에는 相互協力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조·소 동맹조약」 폐기 이후 自衛隊 예산과 현대화 계획 등 일본의 방위관련 문제들에 대한 透明性을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를 아직까지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對日政策은 북방영토문제와 함께 러·일간 갈등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음.

2.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가 러·북관계에 갖는 意味는 양국 제반 관계의 재정립과 북한의 對南挑發 억제 및 북한 안보구조의 약화 등으로 분석될 수 있음.

- 러·북관계는 과거의 理念同盟關係가 종식되고 국익중심의 선린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단계로 進入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舊소련의 지원으로 한국전쟁을 도발하였으나, 러시아의 동맹조약 폐기는 북한의 對南挑發 가능성을 억제하는 效果를 갖게 되었음.

- 북한의 안보는 그동안 「조·소 동맹조약」과 「조·중 동맹조약」이라는 兩軸에 의존되어 왔으나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로 북한 안보구조가 약화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음.

ㅇ 그러나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基本立場은 "오랫동안 제분야에서 결속되어온 모스크바와 평양이 이념적 차이로 關係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兩國은 과거에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와 선린관계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7]는 것임.

- 러시아의 이러한 立場은 북한이 러시아의 접경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돌발적 행동 可能性을 고려하여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서는 안된다는 점, 約 4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對러 債務를 상환받아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러시아는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新國際秩序에 상응하고 남북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면이 배제된 友好協力條約(例: 「한·러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러·베트남 조약)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있음.
- 러시아가 북한측에 提案하고 있는 새로운 조약안의 主要 內

---

7)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Oct. 13~14, 1992), p. 29.

容은 상호 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尊重, 국내문제 불간섭, 상호 무력위협과 무력행사의 금지, 분쟁의 평화적 解決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우호적인 對外環境 조성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동안 동맹조약의 수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북한은 30餘年 前에 체결된 「조·소 동맹조약」의 사실상 效力喪失을 인정하는 한편, 러시아측의 새로운 조약안을 검토·분석할 용의가 있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의 러·북관계는 普遍的인 국가간 선린관계와 호혜적인 국가협력의 원칙을 기초로 하되, 非軍事的인 분야에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지속적인 政治的 對話를 통한 선린관계 유지, 임업과 어업분야의 협력 및 나진-선봉 經濟特區에 대한 진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음.
- 북한은 1996년 6월 次期 大選에서 러시아 연방하원내 다수파인 자민당과 공산당 등 보수파의 執權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ㅇ 러시아의 韓半島政策과 관련, 러시아는 「조·소 동맹조약」 폐기 이후 균형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하고,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國際會議의 개최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균형된 남북한정책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北韓과 정치적 대화와 군사교류를 지속하고 극동지역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중심의 경협을 擴大하는 한편, 한국과도 정치, 경제, 안보면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임.
- 러시아는 북·미간 핵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國際會議 개최를 제의하고 있는 바, 「조·소 동맹조약」 폐기 이후 한반도에 대한 發言權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측됨.

ㅇ 한편 북한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對中 同盟關係를 공고히 하며 對南 평화공세를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軍備를 증강하고 핵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을 것인 바, 이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判斷됨.
- 북한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현대화 계획을 추진하

고 있는 중국과의 同盟關係를 공고히 하는 한편,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對美와 對日 수교협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단기적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 對南 平和攻勢를 통해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駐韓美軍 철수와 「한·미 상호안보조약」 폐기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V. 韓國의 考慮事項

ㅇ 政治面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조·소 동맹조약」 폐기통보 이후 러시아 연방하원내 다수파인 자민당, 공산당 등 保守派가 차기 대선에서 집권할 것에 대비하여 이들과의 連帶를 강화할 것인 바, 우리 정부는 러시아 보수파의 집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對處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우리 정부는 「조·소 동맹조약」 폐기가 러시아 國家두마(연방하원)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또는 聯邦會議(연방상원)에서 승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면 국제조약의 批准 및 破棄는 國家두마 의원 총수의 다수투표로 채택되고(제105조 2항), 聯邦會議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승인됨(제105조 4항).

ㅇ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에 따라서 북·미와 북·일간 관계정상화 교섭이 加速化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남북대화의 진전 정도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協商에 임하도록 양국 정부에 促求해야 할 것임.

○ 安保·軍事面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러시아와의 共助體制를 유지하고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촉구하되, 러시아의 對北韓 군사무기 판매 가능성을 견제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체제유지와 협상 카드로의 活用을 위하여 핵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북한 핵의 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공조체제를 긴밀히 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解體 등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미국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사자간 協議·解決과 주변 관련국가들의 협조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構築方案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유도해야 할 것임.
- 러시아는 현재 제3세계에 대한 무기판매를 擴大하고 있는 바, 對北韓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상업적 차원을 구실로 북한에 군사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무기 販賣가 경제적 실익보다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 등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에 주는 副作用이 더 크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經濟面에서, 「조·소 동맹조약」의 폐기에 대한 러시아의 意圖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對러 經協, 특히 對러 投資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러시아의 경제회복 趨勢에 맞추어 對러 投資를 확대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정국안정을 지원하고 천연자원과 해외수출시장 確保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임.

<附錄>「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全文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1961년 7월 6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최고회의상임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原則에 기초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親善關係를 강화하고 發展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目的과 原則에 입각하여 極東과 全世界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공고화를 促進할 것을 希望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國家聯合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武力侵攻이 있을 경우에 援助와 支持를 상호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親善, 善隣과 협조의 강화가 양국 인민들의 사활적 利益에 부합되며 그들의 經濟와 文化의 금후의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促進시키라는 것을 確信하면서,

이 目的으로 本 條約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全權代表를 임명하였다.

[全權代表의 姓名]

兩全權代表는 소정의 형식과 完全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交換한 후 다음에 관하여 合意하였다.

第 1 條

締約 雙方은 그들이 앞으로도 極東과 全世界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的 活動에 참가할 것이며 이 高貴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聲明한다.

締約 일방이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戰爭狀態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保有하고 있는 온갖 手段으로써 군사적 및 其他 援助를 제공한다.

第 2 條

締約 雙方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同盟도 체결하지 않

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措置에도 參加하지 않을 데 대한 義務를 진다.

第 3 條

締約 雙方은 平和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促進시킬 것을 念願하면서 兩國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國際問題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第 4 條

締約 雙方은 평등, 국가주권의 상호 尊重, 영토보존과 상호 內政不干涉의 原則들에 입각하여 親善과 協調의 정신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經濟的 및 文化的 관계를 强化·發展시키며 경제 및 문화 分野에서 가능한 모든 援助를 상호 제공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의 必要한 協調를 실현할 의무를 진다.

第 5 條

締約 雙方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實

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解決이 조선인민의 民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된다고 認定한다.

第 6 條

條約은 平壤에서 批准書를 교환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條約은 10年間 效力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期限 滿了 1년전에 條約을 廢棄할 데 대한 希望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條約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效力을 가지며 이와 같은 節次에 의하여 앞으로 有效期間이 延長된다.

本 條約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市에서 露語 와 朝鮮語로 각각 2부씩 作成되었으며, 이 두 原本은 동등한 效力을 가진다.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Ⅳ)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硏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硏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合事例 硏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硏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硏究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硏究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94－07　金正日 리더쉽 硏究

94－08　北韓 民族主義 硏究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擧制度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硏究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與論調査 結果

94－20　「조선전사」解題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94－24　韓國 民族主義 硏究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硏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硏究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硏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硏究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95－03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의 發展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94－10 韓·러關系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94－18　美國의 中間選擧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硏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94－01　統一文化硏究(上)

94－02　統一文化硏究(下)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統一情勢分析 95-0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9月 日
發行日 1995年 9月 日